JIPYONG NEWSLETTER
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
JIPYONG
2016년 11월 제59호

목 차

▌지평 소식 ▐

- 김용길 변호사 영입 5
- 손수현 변호사 영입 6
- 김종윤 외국변호사 영입 7
- 손영 외국변호사 영입 8
- 박지선 외국변호사 영입 9
- 신주연 변호사 영입 및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파견 10
- 나민형 공인회계사 영입 및 미얀마 양곤 사무소 파견 11
- 이병주, 배기완, 성보석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12
- 2016 지평 체육대회 15
- 로펌공익네트워크,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16
- [공익] 2016 지평 공익의 날, 두루 창립 기념 행사 外 17
- 두루, 사단법인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27

▌주요 업무 사례 ▐

- 국어기본법 제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 28
-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인용 전부승소 29
- 부산광역시를 대리하여 백양터널 유한회사의 재정지원금 지급 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청구기각) 30
- 공동감금·공동강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고양문화재단 전현직 간부들을 대리하여 무죄 선고 31
- KB캐피탈 및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코라오그룹과의 라오스 리스업 진출에 대한 합작투자 자문 32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포스코LED 매각 자문 33
- 키움증권을 대리하여 TS저축은행 지분 인수 자문 34
- 키스톤과 유암코를 대리하여 국제종합기계의 지분 인수 자문 35
-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코라오그룹 인도차이나뱅크의 사모사채 인수 자문 36
- 키스톤 PE와 에코프라임 PE를 대리하여 동부건설 인수 자문 37
- 인도네시아 최고급 리조트인 Alila 체인 리조트의 운영사이자 인도네시아 상장법인인 부바(PT BUVA)를 대리하여 투자 유치 자문 38
- 현대알루미늄비나를 대리하여 호치민 '더 랜드마크 81' 빌딩 커튼월 외장공사 수주계약 자문 39

▌최신 판례 ▐

- [민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 40
- [금융・증권]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 손해발생 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44
- [보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한 준거법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라고 판단한 사례 51

▌최신 법령 ▐

-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57
- [보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61

▌단신 ▐

- 최승수 변호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外 63
- 임성택 변호사, 통일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外 64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 김문희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국제분쟁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 65
- 이광선 변호사,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관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外 66
- 박근배 변호사, 항공안전기술원 법률고문으로 위촉 67
- 이공현 대표변호사, 국립외교원에서 진행하는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에서 '법적 사고와 법체계'를 주제로 강의 68
- 김지형 고문변호사, 국립외교원에서 진행하는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에서 '법적 사고와 법적 논증'을 주제로 강의 外 69
- 김성수 변호사,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경영고위과정(AHP) 21기 강좌에서 '의료경영자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을 주제로 강의 外 70
- 심희정 변호사, '지식재산(IP) 전문가를 위한 김영란법 설명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사례와 쟁점'을 주제로 강의 外 71
- 김지홍 변호사, '아시아경쟁연합(ACA) 2016 연례국제회의'에서 'SEP Regulation and FRAND commitments'를 주제로 발표 72
- 배성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6학년 2학기 '민사기록연습 I' 강의 73
- 정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6년 2학기 '모의재판' 강의 74
- 정철 변호사, 장성 미얀마 법인장, 이공형 전문위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7회 비즈니스페어'에 참석하여 '미얀마 투자법제 환경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강연 및 상담 진행 75
- 류혜정 변호사, '2016 경남 이란시장 진출방안 설명회'에서 '이란 투자환경과 법제'를 주제로 발제 76
- 손계준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공정거래법 전문가 워크샵에서 '일본 사적독점금지법과 하청법 관련 동향'을 주제로 발표 外 77
- 배지영 변호사, '이란 투자 • 진출 세미나'에서 '이란 투자 관련 법률 분석'을 주제로 발표 外 78
- 고세훈 변호사, '미얀마 진출환경 및 한-미얀마 합작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설명회'에서 '미얀마 투자절차 및 투자법제'을 주제로 발표 79
- 민창욱 변호사, 노동법연구 제41호에 논문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개인책임' 게재 80
- 한승혁 외국변호사, '스마트콘텐츠 해외 신흥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동남아 시장의 법률 현황 및 진출 시 주요 법률사항'을 주제로 강의 外 81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 이승민 외국변호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주관 기업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러시아 반부패방지법'을 주제로 발제 外.....82
- 반기일 외국변호사, ASEAN 정상외교 법률지원사업 '1:1 상담회'에서 라오스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제공 外.....83
- 임승혁 공인회계사, 국세청 '자본거래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M&A 세법'을 주제로 강의 外...84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소식 ▐

김용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김용길 변호사)

지평은 지난 9월 26일 김용길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용길 변호사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삼성물산에 입사하여 6년간 국내외 프로젝트의 시공・공정・원가・하도급관리 등 건설업 전반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다시 삼성물산에서 동남아, 중동,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계약검토・관리와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간접비 클레임과 같은 건설분쟁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지평 건설부동산팀에 합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소식 ▐

손수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손수현 변호사)

지평은 지난 10월 28일 손수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손수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지평 해상팀에 소속되어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소식▐

김종윤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김종윤 외국변호사)

지평은 지난 9월 19일 김종윤 외국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종윤 외국변호사는 2015년까지 삼성물산주식회사 상사부문 법무팀에서 근무하였고 기업법무, 컴플라이언스 및 국제거래/투자/금융/프로젝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2000년간 세계 10위 규모의 카작무스 콤비나트 위탁경영사업 관련 법무이슈를 초기부터 종결까지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였고, 2010년 임원 승진 후 회사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및 실행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위원,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및 KOTRA 아카데미 교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소식 ▐

손영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손영 외국변호사)

지평은 11월 25일 손영 외국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손영 외국변호사는 영국 변호사로서, 북미, 유럽, 중동 등 해외 Finance 및 Corporate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각종 국제 계약 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소식 ▐

박지선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박지선 외국변호사)

지평은 지난 10월 17일 박지선 외국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박지선 외국변호사는 2014년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과정을 마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현재 지평에서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소식 ▐

신주연 변호사 영입 및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파견

(법무법인 지평 신주연 변호사)

지평은 지난 9월 1일 신주연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신주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4기로 졸업하고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를 거쳐 현재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에서 베트남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소식 ▐

나민형 공인회계사 영입 및 미얀마 양곤 사무소 파견

(법무법인 지평 나민형 공인회계사)

지평은 지난 10월 24일 나민형 공인회계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나민형 공인회계사는 성균관대학 졸업 후 삼일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에서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수행업무는 회계감사(현대, 포스코, 사모투자전문회사), 합병, 분할, 지주회사설립, 영업양수도, 부실계열사 정리, 대주주지분 매각, GDR 발행 실사, 투자유치를 위한 IM 작성, 자산유동화(ABS, ABL, ABCP) 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타당성 평가, NPL 실사,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가업승계 전략수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등이었습니다.

이후 런던정경대 대학원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스위스, 인도, 라오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UN에서는 SAP 구축에 참여하였으며 포스코 인도 현지법인에서는 재무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코라오홀딩스에서는 그룹내부감사, 이전가격, JV 설립, 홍콩 및 싱가포르에 역외지주회사 설립과 상장을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학교법인 육민관,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영국 Care International UK, 미국 IICD 등 비영리단체에서 일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에서 회계, 세무, 재무기획, 사업타당성 평가, 각종 실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소식 ▐

이병주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이병주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가 지난 9월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병주 변호사는 지평 공정거래팀 소속으로 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각종 회사일반 자문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문 및 실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조사 대응을 포함한 제반 업무 경험이 풍부하며, M&A에 수반되는 기업결합신고 업무 또한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업무뿐 아니라 각종 공정거래 심결 및 소송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과정에서 문제된 이슈를 자문업무에 연결시켜 고객에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TFT-LCD 국제카르텔 사건, 유류할증료 국제카르텔 사건, 자동차부품 국제카르텔 사건 및 베어링 국제카르텔 사건 등 다수의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사업자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고, 국내에서 최초로 문제된 제약사간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사건 및 휴대폰 모뎀칩 제조업체의 조건부 리베이트(conditional rebate)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수의 국내 카르텔 사건과 대규모유통업법 사건, 그리고 글로벌 M&A의 기업결합신고(multi-filing) 중 국내 부분 신고를 포함한 각종 기업결합신고 업무를 처리하였고, 공정거래 관련 기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업내부실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렴, 통일화되는 공정거래법의 특성상 공정거래법 집행 및 소송 과정에서 해외 이론 및 실무를 참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병주 변호사는 경쟁법의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수학하여 경쟁법의 국제적 동향에 밝습니다.

배기완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배기완 변호사)

배기완 변호사가 지난 9월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배기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37기로 수료했으며, 2016년 11월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선박금융을 포함한 금융자문, 해외증권발행, 각종 외국환거래 신고 업무, 해운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업무, 일반기업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현재는 각종 금융기관을 대리한 소송 업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중점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성보석 변호사,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 성보석 변호사)

성보석 변호사가 지난 9월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성보석 변호사는 소송파트 및 증권・금융팀 소속으로서 금융기관 등과 관련된 소송 업무 및 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소식 ▐

2016 지평 체육대회

지평은 10월 22일 경기도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전체 변호사와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한 '2016 지평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히트다! 지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단체 큰 공 굴리기, 판 뒤집기, 신발 던기기, 줄다리기, 미션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천위로 달리기, 비닐동굴 통과하기 등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합을 다졌습니다.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소식 ▐

로펌공익네트워크,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11월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평을 비롯하여 광장, 김앤장, 동인, 로고스, 바른, 세종, 원, 율촌, 태평양, 화우 11개 로펌이 공익활동 활성화와 로펌의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모색을 위해 결성한 단체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가 '공익상근변호사의 관점에서 본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공현 대표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두루 이사장), 임성택 변호사(지평 공익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11개 대형로펌, '공익활동 네트워크' 출범(2016. 11. 10.)
- 법률저널 - 국내 대형 로펌들 '로펌공익네트워크' 결성, 공익활동 박차(2016. 11. 9.)
- 뉴스토마토 - "변호사 공익활동 경제적보상, 로펌 내부 규정 만들어야"(2016. 11. 7.)
- 로이슈 - 대형 법무법인들 모여 '로펌공익네트워크' 결성 및 세미나(2016. 11. 2.)
- 세계일보 - '공익로펌네트워크' 발족... 11월 7일 세미나 개최(2016. 10. 31.)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소식 ▐

2016 지평 공익의 날, 두루 창립 기념 행사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9월 1일 '지평 공익의 날' 및 '두루 창립 기념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임직원 10명이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빵만사)'에서 빵을 구워 자율기부금 형식으로 판매하였고, 오후에는 지난 한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돌아보며 '공익'과 '공감'을 주제로 한 북 콘서트 <공감의 뿌리>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지평·두루, 두루 창립 2주년 맞아 '공익의 날' 기념행사 개최(2016. 9. 2.)
- 세계일보 - 법무법인 지평, '공익의 날' 행사 개최(2016. 9. 2.)
- 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 '공익의 날'과 '두루 창립' 행사 개최(2016. 9. 3.)
- 국토일보 - 법무법인 지평, '공익의 날' 기념 행사 개최(2016. 9. 2.)
- 조세일보 - 법무법인 지평, '공익의 날' 기념 행사 개최(2016. 9. 2.)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2016 사랑의 연탄나눔' 참여

지평 변호사와 직원 30여 명은 지난 11월 26일 '2016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지평은 1가구에 200장씩 10가구 총 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평은 2005년부터 참여하여 12년째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2016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2016. 11. 28.)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2016년 지평 하반기 농촌봉사활동

지평, 사단법인 두루 구성원과 가족 27명은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제천시 덕산면으로 오미자 수확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상반기 봉사활동으로 진행하였던 손모내기 활동 연장선으로 9월 25일에는 벼베기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덕산면에는 마을 공동체 복원을 꿈꾸는 분들이 '사단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하여 덕산포럼, 마을 어린이집, 누리마을 빵까페 등 다양한 농촌공동체 살리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12년부터 농촌봉사활동을 5년째 이어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실천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1박2일' 농촌 봉사(2016. 10. 18.)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공익런치행사 '아기천사손수건만들기'

지평 국제인권소위원회는 공익런치행사로 지난 10월 24일 '아기천사손수건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성원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손수건 키트를 구매하여 손바느질로 아기손수건을 만드는 행사로, 완성된 손수건은 동방사회복지회에서 보살피는 아기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손수건 키트 판매 비용은 병원비 또는 분유비로 사용됩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지평, 공익런치행사 '아기 천사 손수건 만들기' 개최(2016. 10. 28.)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공익디너행사 '어떤 사치품' 프로젝트

지평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와 환경실천소모임이 공동으로 11월 23일 공익디너 '어떤 사치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소녀들을 위해 대안 생리대를 제작하고, 기부를 하는 행사로 지평 구성원 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공익디너행사 '어떤 사치품' 프로젝트(2016. 11. 28.)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일일 중고책방/북카페

지평 환경실천소모임은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지난 9월 6일 '일일 중고책방/북카페'를 열었습니다.

구성원들이 기부한 책과 CD로 마련된 '일일 중고책방/북카페'에서는 원하는 책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다과를 함께하며 좋은 글을 낭독하는 등 친목의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과 함께하는 겨레얼학교 가을소풍'

지평은 지난 10월 15일 부천중앙공원에서 '지평과 함께하는 겨레얼학교 가을소풍'을 진행하였습니다.

겨레얼학교 학생, 교사, 지평 임직원 총 64명은 농구, 배드민턴, 줄넘기, 캐치볼,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레얼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2세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며, 지평은 2011년 학교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공익강연 '수용자 자녀가 당당한 세상, 수용자 자녀(가족) 지원과 법률가의 역할' 개최

지평은 지난 10월 19일 2016년 제3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수용자 자녀가 당당한 세상, 수용자 자녀(가족) 지원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활동

지평은 지난 10월 1일과 11월 5일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빵만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5시간 동안 개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여 직접 구운 빵을 경성교회, 능곡침례교회, 산마루교회, 의정부하늘샘교회, 서기대외국인유학생, 연희동, 남가좌동, 홍은동 이웃들 등 나눔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지평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봉사활동 참여

지평은 지난 9월 5일, 10월 3일, 11월 7일에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봉사활동 참여하여 180여 명의 노숙인분들을 대상으로 급식 배식 및 마무리 정리업무를 하였습니다.

지평 급식봉사활동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소식 ▐

두루, 사단법인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10월 13일 사단법인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나는조합은 사회 소외계층의 지속가능한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단체로, 두루는 지평과 함께 신나는조합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주요 업무 사례 ▐

국어기본법 제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

지평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여 국어기본법 제14조,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부모와 대학교수, 출판사 대표, 한자 강사 등 332명이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자 사용이 필수적인데도 국어기본법과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 등이 한자 문화를 의도적으로 배척해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 등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하여 합헌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2016. 11. 24.)
- 매일경제 - 모든 공공기관 공문서 한글작성 원칙은 합헌(2016. 11. 25.)
- 서울신문 - 공문서 한글작성 의무 '합헌'(2016. 11. 24.)
- 조선일보 - 세종대왕이 웃었다(2016. 11. 25.)
- 경향신문 - 초·중등 한문 선택과목 고시 '합헌'…헌재, 공문서에 '한글 위주 작성'도(2016. 11. 25.)
- 한국경제 - '공문서 한글로 작성' 국어기본법 합헌(2016. 11. 25.)

[담당 변호사]

이공현 대표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박보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주요 업무 사례 ▐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인용 전부승소

지평은 타인 투자 병원의 명의상 개설자 및 원장으로 재직한 것을 이유로 건보공단(피고)으로부터 의료법상 복수개설금지 규정위반이 적용되어 약 2년치 의료비 약 75억 원 전액 환수처분을 당한 의료인(원고)을 대리하여 수행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인용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 아시아투데이 - 법원 "'사무장 병원'과 '네트워크 병원' 불법성 달라"...튼튼병원, 건보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2016. 10. 3.)

[담당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주요 업무 사례 ▐

부산광역시를 대리하여 백양터널 유한회사의 재정지원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승소판결(청구기각)

지평은 백양터널 유한회사(실질적 운영주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117억 원의 재정지원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부산광역시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청구기각)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원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윤성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주요 업무 사례 ▐

공동감금・공동강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고양문화재단 전현직 간부들을 대리하여 무죄 선고

지평은 공동감금・공동강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고양문화재단 전현직 간부들을 대리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백종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주요 업무 사례 ▐

KB캐피탈 및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코라오그룹과의 라오스 리스업 진출에 대한 합작투자 자문

지평은 KB캐피탈 및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코라오그룹과의 라오스 리스업 진출에 대한 합작투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아시아경제 - 코라오홀딩스, KB금융그룹과 라오스 합작 리스회사 설립(2016. 2. 4.)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주요 업무 사례 ▐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포스코LED 매각 자문

지평은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포스코LED 매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이데일리 - 포스코LED, 아미트론에 매각...90억원 유증 단독참여(2016. 4. 5.)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주요 업무 사례 ▐

키움증권을 대리하여 TS저축은행 지분 인수 자문

지평은 키움증권을 대리하여 TS저축은행 지분 인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키움증권, 885억원에 TS저축은행 인수(2016. 7. 20.)

[담당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주요 업무 사례 ▐

키스톤과 유암코를 대리하여 국제종합기계의 지분 인수 자문

지평은 키스톤과 유암코를 대리하여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국제종합기계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동양물산, 국제종합기계 인수...M&A로 농기계 업계 1위 된다(2016. 7. 24.)

[담당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주요 업무 사례 ▐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코라오그룹 인도차이나뱅크의 사모사채 인수 자문

지평은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코라오그룹 인도차이나뱅크의 5,000만 달러 사모사채 인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아시아경제 - 코라오홀딩스 인도차이나뱅크, KB국민카드와 5천만 달러 채권 발행(2016. 9. 1.)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주요 업무 사례 ▐

키스톤 PE와 에코프라임 PE를 대리하여 동부건설 인수 자문

지평은 키스톤 PE와 에코프라임 PE가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 설립한 PEF 3개사를 대리하여 2,000억 원 규모의 동부건설 인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하여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조선비즈 - 동부건설, 키스톤에코프라임으로 최대주주 변경(2016. 10. 5.)

[담당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안중성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주요 업무 사례 ▐

인도네시아 최고급 리조트인 Alila 체인 리조트의 운영사이자 인도네시아 상장법인인 부바(PT BUVA)를 대리하여 투자 유치 자문

지평은 인도네시아 최고급 리조트인 Alila 체인 리조트의 운영사이자 인도네시아 상장법인인 부바(PT Bukit Uluwatu Villa Tbk, "PT BUVA")를 대리하여 250억 원의 투자 유치 관련 주식매매 및 신주 인수 계약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더벨 - 대명-도미누스인베스트, 인니 리조트에 250억원 투자(2016. 10. 28.)

[담당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최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주요 업무 사례 ▐

현대알루미늄비나를 대리하여 호치민 '더 랜드마크 81' 빌딩 커튼월 외장공사 수주계약 자문

지평은 현대알루미늄비나를 대리하여 호치민 '더 랜드마크 81' 빌딩 커튼월 외장공사 수주계약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일보 - 알루코 그룹 현대알루미늄, 호치민 초고층 빌딩 커튼월 공사 수주(2016. 11. 14.)
- EBN - 현대알루미늄, 호치민 랜드마크 빌딩 커튼월 공사 수주(2016. 11. 15.)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신주연 변호사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최신 판례 ▐

[민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

박영주 변호사 | 구정모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A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B는 A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는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습니다.

나. 그 후 C는 A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들에 기초하여 A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다. 한편 피고는 B가 제기한 위 소송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2. 쟁점

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다.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3.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다.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4. 해설

이 사건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은 C가 받은 위 각 전부명령이 모두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A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전부와 이에 대하여 C가 받은 최초의 전부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C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도 위와 같이 C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위 C가 받은 최초의 전부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피고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우선 B가 제기한 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A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B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A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B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C가 그 이후에 피대위채권인 A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받은 위 각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B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직접 지급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지만, 나아가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 이에 대한 전부명령까지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새로 확인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최신 판례 ▐

[금융・증권]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 손해발생 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배성진 변호사 | 성보석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1 A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는 2006년 1월경 주식회사 B저축은행(이하 'B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C저축은행(이하 'C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B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회수구조는 B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피고회사는 C저축은행과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에 의해 C저축은행에 대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B저축은행 주식을 투자원금에 복리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풋옵션')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나. 피고회사는 2006년 2월 2일 위 인수를 위하여 합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었고, 원고는 피고회사 및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2의 투자 참여 권유에 따라 2006년 4월 18일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이하 '이 사건 투자')하여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16%(이하 '이 사건 지분')를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이 되었습니다.

다. 이와 같은 투자 참여 권유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B저축은행을 인수한 1년 뒤부터 C저축은행에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C저축은행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 2009년 10월까지는 이 사건 풋옵션이 행사되더라도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B저축은행의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 이후 C저축은행은 66억 원을 투자하여 B저축은행 주식 30%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원고 등으로부터 모든 자금 125억 원을 투자하여 B저축은행의 주식 55%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B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9일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C저축은행도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C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이전인 2011년 2월 15일 C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C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의해 이 사건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 253억 원(= 원금 125억 원 + 복리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바. C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원심의 변론종결 시점에 가장 가까운 2014년 7월 15일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C저축은행의 2014년 2/4분기 정기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C저축은행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총 배당예상률은 26.24%였습니다.

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손해액은 투자금 20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근거가 무엇인지, ② 원고의 손해 발생이 확정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된 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C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시점인지 아니면 이 사건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시점인지), ③ 손해액 산정 시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는지 입니다. 그 중 ②번이 주된 쟁점으로서 원심과 대법원이 서로 상반된 판단을 할 부분입니다.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1]의 판단

(1)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지위와 자산운용회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고, 이것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은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 이 사건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은 피고회사가 자산운용회사로서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2) 원고의 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81028(본소), 2014나49014(반소) 판결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구 간접투자법상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투자원금에서 그 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증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 되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일 이후 또는 중도환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환매일 이후로서 수익증권 잔존가치의 산정이 가능한 때에 확정되므로, 그때가 투자자가 입은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한 시점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총 예상배당률에 관한 이 사건 정기보고서에 의해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C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금액이 산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기보고서의 작성 시점에 이 사건 지분의 잔존가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보고서의 작성 시점인 2014년 7월 15일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시점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입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피고들이 이 사건 풋옵션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잘못된 투자판단을 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이 사건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상당의 재산상 불이익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의해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액수 즉, 이 사건 지분의 가치는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가치 중 이 사건 지분 상당액인데,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보유재산 없이 B저축은행 주식 55%와 이 사건 풋옵션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가치는 결국 위 주식 55%와 이 사건 풋옵션의 가치에 좌우됩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그런데 2012년 2월 23일 B저축은행의 파산선고로 B저축은행 주식 55%의 가치는 그 무렵 투자원금 이하로 떨어졌고, 2012년 8월 16일 C저축은행까지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일종의 인적 담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풋옵션에 의해서도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C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2012년 8월 16일에 이 사건 지분의 취득에 따른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되었고, 이때에 이 사건 지분의 취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2년 8월 16일이고, 이 사건 정기보고서가 작성된 2014년 7월 15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본 원심은 투자권유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2) 손해액 산정 시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파산선고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도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경우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법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적용됩니다. 또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8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므로,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인 파산채권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향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고서에 기재된 총 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습니다.

4. 대법원 판결의 의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제6항 제2호도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같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보장 약정으로 인한 부당권유행위를 한 업무집행사원인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지분의 구체적인 잔존가치 산정이 가능한 때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시점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지분의 구체적인 잔존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대상인 B저축은행과 이 사건 옵션에 따라 인적 담보로 볼 수 있는 C저축은행이 파산함으로써 원고의 투자원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나중에 파산한 C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시점에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때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된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은 불법행위 성립 시점인 C저축은행의 파산선고일 이후에 파산관재인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정기보고서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가 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파산선고 시점을 손해발생 및 그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본 대법원의 판단은 일응 수긍이 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채권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만연히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견해보다는 타당합니다. 대상 대법원 판결은 채권자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손해 발생 시점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채무자나 투자대상 회사의 파산선고 시점으로 앞당겼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본소), 2015다19124(반소) 판결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최신 판례 ▐

[보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한 준거법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라고 판단한 사례

배성진 변호사 | 배기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는 2012년 6월 14일 터키의 A회사에 폴리라이제이션 라인 1세트 4포장(이하 '이 사건 화물')을 미화 350만 달러에 매도.

나. 원고는 2012년 6월 22일 미합중국 법인인 피고와 B화물에 관하여 부보금액 미화 385만 달러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영국 런던 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의 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이하 '영국 적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WAIPO 조건(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일정한 해상고유의 위험을 해손의 종류나 규모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조건)으로 체결.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약관은 다음과 같음.

-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된다(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라는 내용의 준거법 약관(이하 '이 사건 준거법 약관')
- 원고가 피고에게 부보화물의 갑판적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범위는 '투하(投下, Jettison)와 갑판유실(甲板流失, Washing Overboard)' 이외의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일반 분손(分損)은 담보하지 않는 분손부담보[分損不擔保,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조건으로 축소된다는 내용의 '갑판적재(甲板積載) 약관'(On-Deck Clause, 이하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

라. 원고는 중국 상하이 항부터 터키의 이스켄데룬 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대한민국 법인 C회사에 의뢰함. C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에는 '이 사건 화물은 송하인·수하인의 위험부담으로 갑판에 적재되는데, 그 손실·손상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 또는 선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운송인 면책약관(이하 '이 사건 운송인 면책특약'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음.

마. 이 사건 화물 4포장 중 1포장인 보일러 1대(이하 '이 사건 보일러')가 운송 중 해상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발생.

바. A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2013년 4월 3일 피고에게 양도 통지.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원심은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은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단.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한 준거법

"국제사법 제25조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만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이 준거법이 되지만,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의 적용 범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이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4항이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다.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법상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데 대한 증명책임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에 의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참조)."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라. '갑판유실' 및 '갑판멸실'의 구분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영국 런던 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의 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판유실(甲板流失, Washing Overboard)'이란, 해수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이 휩쓸려 배 밖으로 유실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이므로, 악천후로 인한 배의 흔들림이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하여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이 멸실되는 이른바 '갑판멸실(甲板滅失, Loss Overboard)'은 '갑판적재(甲板積載)약관'(On-Deck Clause)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판결의 검토

가. 관련 규정

국제사법 제25조 (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제사법 제26조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결의 의의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1) 준거법 선택에 관한 기준 제시

보험계약의 준거법 조항은 1) 보험계약 전부에 대한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 2) 보험계약의 일부에 관해 준거법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준거법 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전부가 아닌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한정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① 이 사건 준거법 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전부에 대한 준거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한정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한 것이므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②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이 계약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참조), ③ 이에 관하여는 영국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여 계약의 일부에 관해서만 준거법을 택한 경우 준거법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준거법 선택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 '갑판유실'과 '갑판멸실'의 개념 구분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영국 적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판유실'의 개념에 '갑판멸실'이 포함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두 개념 모두 외부작용으로 인해 갑판 위에서 화물이 배 밖으로 사라지는 것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①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영국 적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판유실(甲板流失, Washing Overboard)'이란, 해수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이 휩쓸려 배 밖으로 유실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이므로, ② 악천후로 인한 배의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흔들림이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하여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이 멸실되는 이른바 '갑판멸실(甲板滅失, Loss Overboard)'은 갑판적재 약관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갑판유실'과 '갑판멸실'이 구분되며, '갑판유실'의 개념에 '갑판멸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히 사고 당시의 파도의 정도, 풍속, 사진 등이 '갑판유실'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했는데, 갑판적재 약관의 담보범위 판단과 관련하여 화물의 멸실 과정에 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최신 법령 ▐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배성진, 권순철 변호사 | 윤재민 변호사

1. 주요 내용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해당 개정은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바라는 채권자·채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회생절차를 개선·보완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1)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진행의 주요사항(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 회생계획안, 회생절차의 폐지 또는 종결)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가 관리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22조의2 신설).

(2) 신규자금에 사용목적이 정해진 경우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보고사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항에 신규자금의 집행사항을 추가함(제39조의2 제2항 제3호 다목).

(3)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 선임 시 의견조회를 해야 할 대상에 채권자협의회를 추가하고,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신규자금을 대여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해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87조 제1항, 제6항).

(4)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채무자의 신규자금 차입 허가 시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을 채권자협의회로 변경하고, 법원이 신규자금 차입 허가를 함에 있어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도록 함(제179조 제2항).

나.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

회생절차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계속적 상거래를 통하여 자금 확보 및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함(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신설).

(2) 회생계획 인가요건인 평등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해당 원칙에 반하지 않는 사유에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를 추가함(제218조 제1항 제3호 신설).

(3)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변경함(제132조 제1항).

(4)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회생채권을 변제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변경함(제132조 제2항).

다.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

사전계획안 제출에 의한 회생절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1)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23조 제1항).

(2) 사전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외의 채권자는 제240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회신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제223조 제3항).

(3) 사전계획안 제출자는 채권자 목록, 제92조 제1항 각 호[2]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함(제223조 제4항).

(4)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 목록을 제147조 제1항의 목록을 봄(제223조 제5항).

(5)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을 정하지 아니함(제50조 제1항 제1호).

(6)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의 시기(始期)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제50조 제1항 제2호).

(7)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의 시기(始期)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

[2] 관리인의 조사보고 사항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제50조 제1항 제4호).

(8)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240조 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봄(제223조 제8항 신설).

(9)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에는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함(제240조 제2항).

(10)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242조의2).

라. 채권자 참여 확대

회생절차 참여 확대를 통해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강화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1)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함(제20조 제4항 신설).

(2)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함(제74조 제7항 신설).

2. 다운로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배성진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1. 주요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이 2016년 9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GA"**)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상품비교설명제도(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리 또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제도)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보험회사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 따라 ① 대형 GA에 대하여도 보험 모집시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도입되었고, ② 대형 GA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자신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 별표 5의6, 별표 7의2 제6호 라목).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체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 및 대형 GA에 대한 추가 업무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위 업무기준 외에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불공정행위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추가 업무기준(금지사항)이 마련되어 적용됩니다. 즉 (i)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ii) 보험계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iii)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iv)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v)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2항, 별표 5의7).

이번 개정사항 중 위 (iii)의 사항(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 중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 수수 금지)은 2019년 4월 1일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최승수 변호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10월 26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최승수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6학년 2학기 'Gam-bling Law', 'Motion Picture Law' 강의

최승수 변호사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6학년 2학기 'Gambling Law', 'Motion Picture Law'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임성택 변호사, 통일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10월 24일 통일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임성택 변호사,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서 '다양한 몸의 평등한 삶'을 주제로 강연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11월 10일 대법원에서 법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연자로 초청되어 '다양한 몸의 평등한 삶'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임성택 변호사는 대법원 기타 서울지역 법원 6개에서 시각장애 미국변호사인 김현아 변호사와 함께 토크쇼 형태로 위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세계일보 - "사법부 구성원들, '장애는 좀 다를 뿐' 인식 가져야"(2016. 11. 11.)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김문희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국제분쟁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

김문희 변호사는 지난 11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국제분쟁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이광선 변호사,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관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이광선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는 지난 9월 21일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관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이광선 변호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로 위촉

이광선 변호사는 지난 9월 1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박근배 변호사, 항공안전기술원 법률고문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박근배 변호사)

박근배 변호사는 지난 11월 15일 항공안전기술원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이공현 대표변호사, 국립외교원에서 진행하는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에서 '법적 사고와 법체계'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이공현 대표변호사)

이공현 대표변호사는 지난 8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국립외교원에서 진행하는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에서 '법적 사고와 법체계'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김지형 고문변호사, 국립외교원에서 진행하는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에서 '법적 사고와 법적 논증'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지난 9월 26일 국립외교원에서 진행하는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에서 '법적 사고와 법적 논증'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김지형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프로보노 리더십 포럼에서 '참 좋은 법률가는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라는 주제로 강의

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지난 9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보노 리더십 포럼에서 '참 좋은 법률가는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김성수 변호사,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경영고위과정(AHP) 21기 강좌에서 '의료경영자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9월 29일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경영고위과정(AHP) 21기 강좌에서 국공립 및 사립 병원 경영자 등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의료경영자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판례의 경향' 주제발표에 대하여 지정토론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11월 19일 대한의료법학회와 대법원 의료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판례의 경향' 주제발표에 대하여 지정토론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의협신문 -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민사법' 집중 검토(2016. 11. 7.)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심희정 변호사, '지식재산(IP) 전문가를 위한 김영란법 설명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사례와 쟁점'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심희정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는 지난 9월 28일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와 IP노믹스의 공동 주최로 열린 '지식재산(IP) 전문가를 위한 김영란법 설명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사례와 쟁점'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전자신문 - [IP노믹스] 지식재산전문가, '김영란법' 걸릴라(2016. 9. 29.)

심희정 변호사, 패션그룹 형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강의

심희정 변호사는 지난 10월 7일 패션그룹 형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김지홍 변호사, '아시아경쟁연합(ACA) 2016 연례국제회의'에서 'SEP Regulation and FRAND commitments'를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김지홍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는 지난 10 월 29 일 '아시아경쟁연합(ACA) 2016 연례국제회의'에서 'SEP Regulation and FRAND commitments'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배성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6학년 2학기 '민사기록연습 I' 강의

(법무법인 지평 배성진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6학년 2학기 '민사기록연습 I'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정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6년 2학기 '모의재판' 강의

(법무법인 지평 정원 변호사)

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6년 2학기 '모의재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정철 변호사, 장성 미얀마 법인장, 이공형 전문위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7회 비즈니스페어'에 참석하여 '미얀마 투자법제 환경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강연 및 상담 진행

(법무법인 지평 정철 변호사, 장성 미얀마 법인장, 이공형 전문위원)

정철 변호사, 장성 미얀마 법인장, 이공형 전문위원은 지난 11월 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7회 비즈니스페어'에 참석하였습니다. 정철 변호사는 이날 '미얀마 투자법제 환경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강연하였고, 강연 후에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미얀마 진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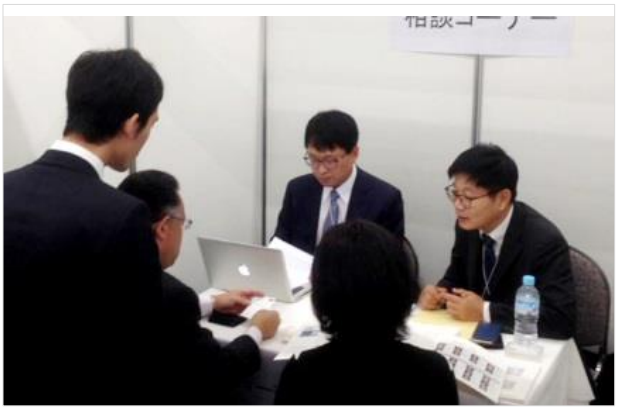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류혜정 변호사, '2016 경남 이란시장 진출방안 설명회'에서 '이란 투자환경과 법제'를 주제로 발제

(법무법인 지평 류혜정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는 지난 11월 9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2016 경남 이란시장 진출방안 설명회'에서 '이란 투자환경과 법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경남도민신문 - "이란 시장, 아는 만큼 열린다"(2016. 11. 9.)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손계준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공정거래법 전문가 워크샵에서 '일본 사적독점금지법과 하청법 관련 동향'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손계준 변호사)

손계준 변호사는 지난 10월 7일 한국법제연구원 공정거래법 전문가 워크샵에서 '일본 사적독점금지법과 하청법 관련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손계준 변호사, 현대로템 본사 구매파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단계별 점검사항'을 주제로 강의

손계준 변호사는 지난 10월 10일 현대로템 본사 구매파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단계별 점검사항'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손계준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판례연구 제30집(1)에 논문 '카르텔과 정보교환행위 - 라면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게재

손계준 변호사의 논문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판례연구 제30집(1)에 '카르텔과 정보교환행위 - 라면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배지영 변호사, '이란 투자·진출 세미나'에서 '이란 투자 관련 법률 분석'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배지영 변호사)

배지영 변호사는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와 삼정KPMG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란 투자·진출 세미나'에서 '이란 투자 관련 법률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서울경제 - 삼정KPMG, 21일 '이란 진출 세미나' 개최(2016. 9. 20.)

[관련 사진]

배지영 변호사, '한-이란 화장품산업 비지니스 미팅 세미나'에서 '이란 투자 관련 법률 분석'을 주제로 발표

배지영 변호사는 지난 10월 19일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란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을 초청하여 개최한 '한-이란 화장품산업 비지니스 미팅 세미나'에서 '이란 투자 관련 법률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고세훈 변호사, '미얀마 진출환경 및 한-미얀마 합작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설명회'에서 '미얀마 투자절차 및 투자법제'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고세훈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는 지난 10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코트라 공동주최로 열린 '미얀마 진출환경 및 한-미얀마 합작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설명회'에서 '미얀마 투자절차 및 투자법제'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민창욱 변호사, 노동법연구 제41호에 논문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개인책임' 게재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

지난 9월 출간된 노동법연구 제41호에 민창욱 변호사의 논문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개인책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한승혁 외국변호사, '스마트콘텐츠 해외 신흥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동남아 시장의 법률 현황 및 진출 시 주요 법률사항'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한승혁 외국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는 지난 10월 4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스마트콘텐츠 해외 신흥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동남아 시장의 법률 현황 및 진출 시 주요 법률사항'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한승혁 외국변호사, 한국금융연수원 '현지 지역전문가(인도네시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법률 특징'을 주제로 강의

한승혁 외국변호사는 지난 11월 25일 한국금융연수원 '현지 지역전문가(인도네시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법률 특징'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이승민 외국변호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주관 기업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러시아 반부패방지법'을 주제로 발제

(법무법인 지평 이승민 외국변호사)

이승민 외국변호사는 지난 10월 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주관 기업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러시아 반부패방지법'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승민 외국변호사, 러시아 모스크바 중소기업인협회 정례회의에서 '러시아 최근 법률 개정 동향'을 주제로 발제

이승민 외국변호사는 지난 10월 25일 러시아 모스크바 중소기업인협회 정례회의에서 '러시아 최근 법률 개정 동향'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반기일 외국변호사, ASEAN 정상외교 법률지원사업 '1:1 상담회'에서 라오스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제공

(법무법인 지평 반기일 외국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는 지난 9월 8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 정상외교 법률지원사업 '1:1 상담회'에서, 라오스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무부와 함께 법률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이데일리 - 靑 "韓기업, 러시아·라오스 1:1상담회서 2500억원 성과" (2016. 9. 11.)

반기일 외국변호사, 코트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포럼'에서 '캄보디아 투자 절차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제

반기일 외국변호사는 지난 11월 17일 코트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포럼'에서 '캄보디아 투자 절차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단신 ▐

임승혁 공인회계사, 국세청 '자본거래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M&A 세법'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임승혁 공인회계사)

임승혁 공인회계사는 지난 9월 9일, 10월 27일 국세청 '자본거래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M&A 세법'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임승혁 공인회계사, 국세청 직무능력개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및 분석기법 과정'에서 'M&A와 세법상 평가'를 주제로 강의

임승혁 공인회계사는 지난 10월 7일, 10월 14일, 10월 21일 국세청 직무능력개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및 분석기법 과정'에서 'M&A와 세법상 평가'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